

# 전력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의 공사감리 특례규정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우

## I. 머리말

정부에서는 지난 정기국회 말인 2001년 11월 28일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 8일 제227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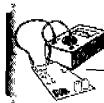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①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③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전력기술인·설계사·감리원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벌칙을 강화토록 하며, ④기타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국

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금번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종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 일반건축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은 제외)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 2(공사감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현행 전기공사감리의 체계, 특례규정의 제안경위와 용역시장 규모의 변동, 주요쟁점과 검토의견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II.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배경과 전기 공사감리의 체계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감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보(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두어 시행하여 왔으나, 건설업계의 관행인 하도급과 그로 인한 건축비 절감은 부실감리와 부실시공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전기화재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996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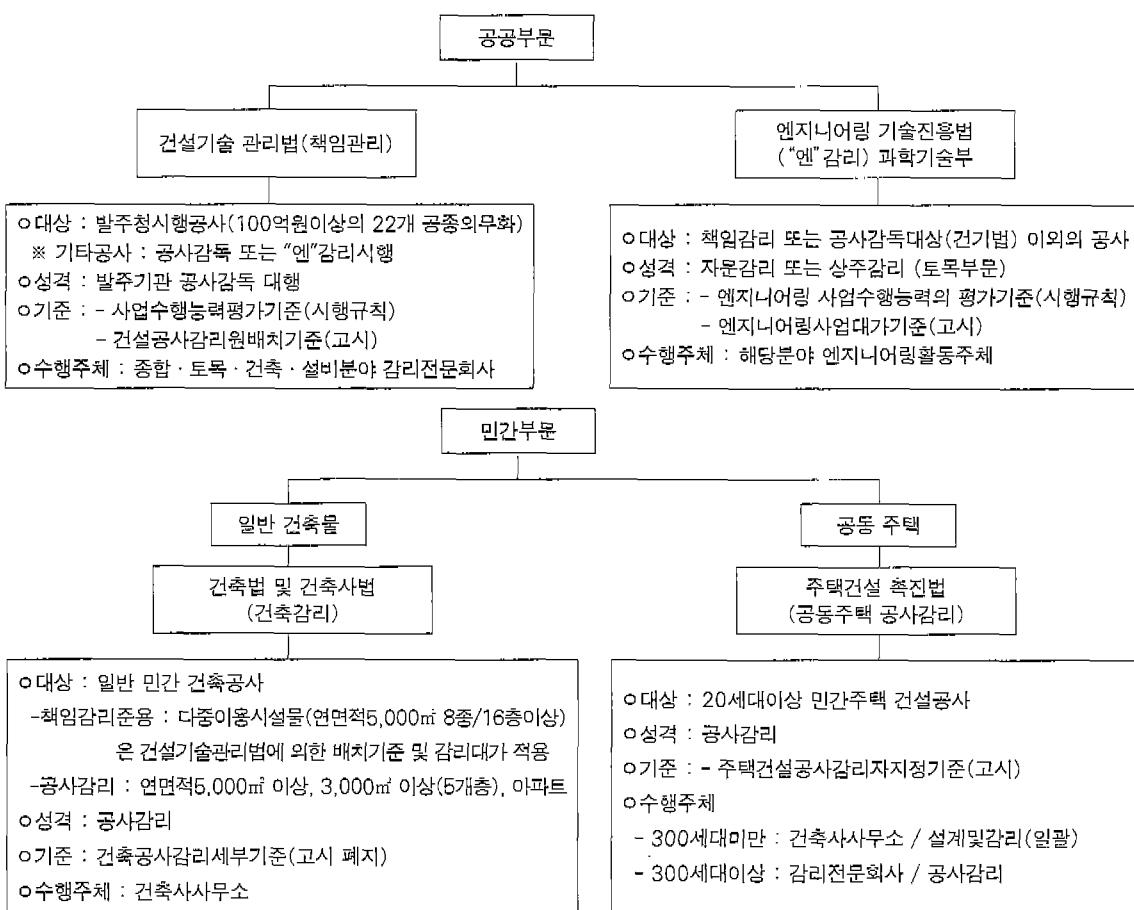
이와 같이 전력기술관리법이 전기공사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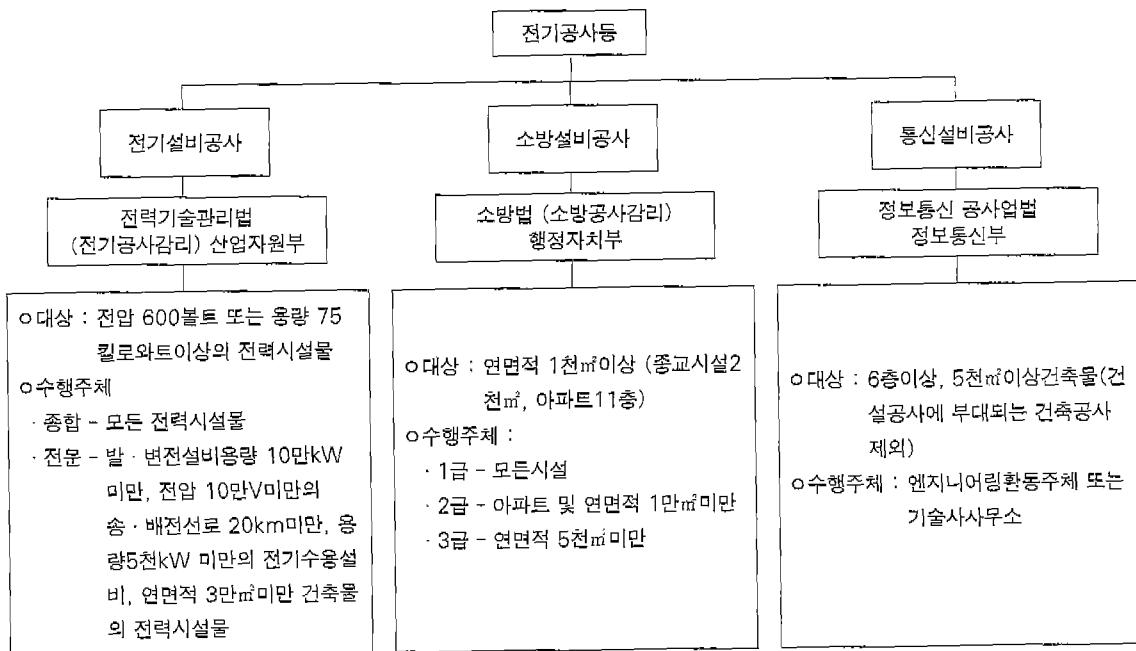
관하여 건축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현재 건축법에 의한 전기감리는 시행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도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2001년 12월 말 기준 189개)을 하고 중요 전기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의 대상은 일반용전기설비(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제외한 중요 전기설비공사이므로 소규모(일반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공사는 종전과 같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보(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분야는 전문분야

###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제도





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소방감리는 「소방법(제65조의2)」, 정보통신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등 개별법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한 전문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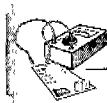
### III. 전기공사감리 특례규정의 제안경위 와 용역시장규모의 변동

1999년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전 부처에서 큰 흐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전기공사 감리에 관한 중복규제 정비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해 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설비분야별 전문성은 인정하되 다만,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감리는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을 상호 인정하여 발주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하고 관련법 개

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건설교통부가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에 공사감리 특례규정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전기 관련단체 등의 반대탄원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통해 건축법에 반영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전력기술관리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전기공사감리에 대한 특례규정은 두되 전기공사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원배치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전기학계 및 전력기술인 등으로부터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업체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사감리 특례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건설교통부와 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는 감리원배치기준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특례규정만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감리에 대한 용역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전력기술관리법상의 공사감리 대상은 13,113건에 2,000억원, 건축법상의 공사감리대상(5,000m<sup>2</sup> 이상의 건축물공사, 다만, 공사비 100억이상 22개공종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공사,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제외)은 6,500건에 1,320억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전기공사감리 특례규정이 적용되면 총전의 전체 전기감리 용역시장 2,000억원중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가 전기감리용역을 수주하는 비율은 66.0%(B/A)인 약 1,3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공사감리 용역시장 규모  
(2000년말 기준)

| 구 분                  | 공공<br>발주  | 민간<br>발주 | 공동<br>발주 | 소 계      |
|----------------------|-----------|----------|----------|----------|
| 전력기술관리법상의<br>공사감리 대상 | 발주건수(건)   | 290      | 11,183   | 1,640    |
|                      | 감리용액비(억원) | 355      | 1,101    | 544      |
| 건축법상의<br>공사 감리대상     | 발주건수(건)   | -        | 5,900    | 1,250    |
|                      | 감리용액비(억원) | -        | 935      | 385      |
|                      |           |          |          | 1,320(B) |

법개정이후 전기공사감리 용역시장 변동내역

| 구 分              | 전기공사감리    |        | 소 계                |
|------------------|-----------|--------|--------------------|
|                  | 전기감리업체    | 건축사사무소 |                    |
| 법<br>개<br>정<br>전 | 감리기능업체(개) | 449    | 150 (전기감리방행등록) 599 |
|                  | 감리용액비(억원) | 1,350  | 650 2,000          |
|                  | 비율(%)     | 67     | 33 100             |
| 법<br>개<br>정<br>후 | 감리기능업체(개) | 449    | 7,000 7,449        |
|                  | 감리용액비(억원) | 680    | 1,320 2,000        |
|                  | 비율(%)     | 34     | 66 100             |

## IV. 주요쟁점과 검토의견

### 1. 전기공사감리의 법적근거 문제 – 전력기술관리법의 사문화 우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공사감리를 받도록 한 사항을 규제의 하나로 보아 발주자로 하여금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축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전기공사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자 한 배경에는 건축업계의 통합발주 추진과 전기업계의 분리발주 추진이라는 뿐리깊은 업계의 갈등 외에도 현재 관련 법령상에 일부 혼선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감리는 건축법(제2조 및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으나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일정규모(전압 600V, 용량 75kW)이상의 중요전기설비공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등록요건(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전기감리업체만이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축법령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지 않음에 따라 두 법률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체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전기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인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건축법 관련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감리방식을 임의선택하도록 특례규정이 신설될 경우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 공사감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전부 시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한 전기 전문감리업체는 건축사사무소에 전속되어 전력기술인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중요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이 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2. 중요 전력시설물의 안전확보 문제 – 부실 공사 우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있고, 부실공사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오히려 전력기술관리법만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주자에 대한 규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부실공사감리로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제단)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람을 사상에 이로게 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

축설비인 전기설비공사의 감리부실에 대하여는 벌칙이 규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감리의 필수요건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기

###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관련법 감리규정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전력기술관리법   | 건축법 및 건축사법  |
|------------------------|---|---|
| 주관부처                   | 산업자원부   | 건설교통부   |
| 감리규정의 목적               | 전력시설물공사 부실방지  | 건축물(건축설비 포함)공사 부실방지   |
| 감리적용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업자에게 발주(법 제12조제1항)</li> <li>○ 등록요건 :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보유(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가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건축사법 제23조제1항)</li> <li>○ 신고요건 : 건축사 자격증 사본(건축사법시행령 제22조)</li> </ul>   |
| 감리원의 자격                | 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시행령 제21조 별표 2)  | 건축사보(전기분야),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
| 감리적용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 규모기준(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압 600V 이상 전기설비</li> <li>- 용량 75kW 이상 전기설비</li> <li>- 용량 20kW 이상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전기설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축 연면적 기준(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 5,000m<sup>2</sup> 이상 건축공사</li> <li>- 연속 5개층이상 3,000m<sup>2</sup> 이상 건축공사</li> <li>- 아파트 건축공사</li> </ul> </li> </ul> |
| 감리원배 치 기준              |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등급별 차등배 치(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 3)   | 해당 공사기간 동안 1인 이상 배치(건축법시행령 제 19조5항)   |
| 감리원의 준수사항              |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법 제10조제2항)  | 설계도서(건축법 제21조제2항)   |
| 벌 칙<br>(전기설비)<br>부실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규정 위반 : 법 제28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한 자(2년이하 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li> </ul> </li> <li>○ 미등록 업 영위 : 법 제28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업으로 한 자(2년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li> </ul> </li> <li>○ 부실 감리자 : 법 제29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감리를 한 자(1년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li> </ul> </li> </ul> |   |



준의 준수의무도 규정되고 있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인정할 경우 중요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

반면에 전력기술관리법은 감리적용대상인 중요 전기설비공사(일반용 전기설비는 제외)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는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감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이 완료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성실하게 감리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에는 벌칙을 적용받도록 하여 중요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3. 구체적인 운용의 문제 - 법률적용의 혼란 예상

민간 일반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건축주가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업자의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가 전력기술인을 고용하여 시행하는 감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동일한 전기설비공사 감리를 양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률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우려된다.

더욱이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적용대상(전력기술관리법은 용량, 건축법은 면적)등이 각각 상이하여 관련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 VI. 결 어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12조의2의 전기공사감리의 특례규정은 전기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전문감리업제도를 도입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 법개정에 따른 혼란과 관련업계간의 형평성 문제, 위험도가 높은 전력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업계의 갈등은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전기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참으로 막대하므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성을 가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금번 국회에서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기로 중요전기설비공사 감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1999년도 이후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여 전부처에 걸쳐 거의 모든 법률에 대하여 50%라는 달성목표까지 세우면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을 벌인 바 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옳으나, 안전이나 환경 등 일부 영역에서는 규제완화로 염울 수 있는 효과보다는 안전에 대한 위험 등으로 더 큰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소관법률 중에서도 2001년도부터는 안전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업계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규제완화된 규정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하는 법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번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규제로 인한 효율개선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의 형평성이 나 여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